규약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 골드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2	템플턴 골드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주식) 1호
3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4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
5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6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
7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8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채권)
9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I)(주식)
10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I)(채권)
11	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12	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13	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14	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I)(주식)
15	템플턴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16	템플턴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17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18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19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20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I)(주식)
21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2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3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3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4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4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5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6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7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8	템플턴 퇴직연금 아시안 그로스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9	템플턴 한중일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30	템플턴 한중일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31	프랭클린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2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33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호
34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3호
35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4호
36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호
37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8	프랭클린템플턴 단기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39	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40	프랭클린템플턴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41	프랭클린템플턴 장기회사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4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43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44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45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46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I)(주식)

2. 변경 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신설)**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1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3. 효력 발생일
2011년 5월 3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규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